

[내용증명]

수신 :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206)

2017. 10. 31.

발신 : KT노동조합 중앙위원장 예비후보 조합원 이상호 (010-7223-979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7(청파동3가), 3층

제목 : KT노동조합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요구

이 우편물은 2017-10-31
제 3116201020912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노동운동국제사무국부장
DAILY KOREA

1. 관련

- 가. KT노동조합규약 제48조[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출]
-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다. 선거관리규정 제 1조(목적)
- 라. 김해관 예비후보 출정식(20171026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2. 제 13대 KT노동조합 각급대표자선거에 중앙위원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조합원 이상호입니다.

3. 노조법 제22조와 노동조합 규약 제22조에는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에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의 각급 조직의 대표자(위원장, 지방본부위원장, 지부장, 분회장)와 전국대의원선거를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4. 하지만 지난 2017년10월26일 14시부터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김해관 중앙위원장 예비후보 출정식에서 공식적인 노동조합 행사가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개인적 출정식이었음에도 두 가지 불법 및 규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징계조치와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가. 적발된 불법 및 규약 위반 사항

- (1) 김해관 예비후보의 개인적인 출정식에 노동조합 깃발이 사용되었으며 깃발 전달식까지 진행되어 노조법과 규약을 원천적으로 훼손하고 부정함
- (2) 선거공고와 후보등록 과정이 없었음에도 김해관 중앙위원장 예비후보 및 각 지방본부 예비후보 모두가 기호1번 운동복을 입고 출정식을 진행하였으며, 이것은 공정한 선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불법행위임

5. 본 조합원의 위와 같은 지적과 요구에 대해 정윤모 위원장은 조치결과를 2017년11월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